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한정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210

발의연월일: 2024. 8. 26.

발 의 자: 한정애 · 민홍철 · 이학영

박희승 • 주철현 • 문진석

송옥주 · 한준호 · 이병진

박홍근 • 박지원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부모나 양육자가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아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호장치가 미흡한 현실임.

최근 아동의 당연한 권리와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아동보호정책이 강조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하여 피치료감호자 자녀에 대한 지원 및 보호조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수용자자녀에 대한 지원을 참고하여 피치료감호자 자녀의 지원을 마련하여 피치료감호자 자녀의 권리와 생존을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50조의3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3208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0조의3(피치료감호자자녀 지원의 특례) ① 피치료감호자의 미성년 자녀(이하 이 조에서 "피치료감호자자녀"라 한다) 중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 제4 1조·제52조·제53조 및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를 준용한다.이 경우 "수용자"를 "피치료감호자"로, "수용자자녀"를 "피치료감호자자녀"로, "소장"을 "치료시설의 장"으로 본다.

- 1. 부 또는 모가 피치료감호자인 경우(부모 모두인 경우를 포함한다)
- 2. 부모가 아닌 친족이 양육하는 경우에 그 양육자가 피치료감호자 인 경우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피치료감호자자녀 지원 특례에 관한 적용례) 제50조의3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피치료감호자 자녀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50조의3(피치료감호자자녀 지
	원의 특례) ① 피치료감호자의
	미성년 자녀(이하 이 조에서
	"피치료감호자자녀"라 한다) 중
	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1호에
	따른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
	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
	는 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
	<u>처우에 관한 법률」 제41조·</u>
	<u>제52조·제53조 및 제53조의2</u>
	부터 제53조의4까지를 준용한
	다. 이 경우 "수용자"를 "피치
	료감호자"로, "수용자자녀"를
	"피치료감호자자녀"로, "소장"
	을 "치료시설의 장"으로 본다.
	1. 부 또는 모가 피치료감호자
	인 경우(부모 모두인 경우를
	포함한다)
	2. 부모가 이닌 친족이 양육하
	는 경우에 그 양육자가 피치
	료감호자인 경우